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1		
품명 (세부품명번호)	전투복 (5310270101)	적용 규격	국방 규격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제복 또는 전투복			
2.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 제출한다.			
* 동영상 파일에는 필수생산공정(부착물 부착, 합봉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제품생산 과정’ 및 ‘모든 생산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점검’에서 재확인 예정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1개사가 전투복과 컴벳셔츠를 신청한 경우 각각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생산 가능 여부는 생산인력과 생산설비를 모두 포함			
④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본봉기	10 대	
칼본봉기	2 대	
쌍침기	5 대	
오바룩기	2 대	
인터록기	1 대	
단추구멍기	2 대	
단추달이기	2 대	
컴프레서	1 대	에어 공급
지그재그(바텍) 재봉기	3 대	
바스기	4 대	본봉기 사용시 본봉기 4대 추가함

* 자체 "관리번호"를 장비에 부착하고, "주요 제조시설 현황 목록(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전투복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m ²)	기타
생산 면적	330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창고 면적	100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 사무면적, 생산면적, 창고면적 등이 구분된 도면(간략한 수기 작성 가능) 제출

* 생산면적의 상세 내용(생산설비 배치도) 제출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4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 등이 표기된 '인력 현황관리표'를 제출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주소)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전투복, 컴벳셔츠, 방한복, 전투조끼) 이외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단 장갑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생산 인력은 최대 30% 까지 섬유·피복류에 인정 할 수 있다.

* 장갑, 모자류 등(피복류 이외 품목)의 생산인력은 중복 적용 불가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2		
품명 (세부품명번호)	컴벳서츠 (5310270101)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생산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특수 군복(컴벳서츠)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 제출한다. * 동영상 파일에는 필수생산공정(부착물 부착, 합봉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제품생산 과정' 및 '모든 생산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점검'에서 재확인 예정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연속 생산과정을 확인하여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한편 확인서에는 생산 인력 등급을 표시한다. * 예) 컴벳서츠 C등급(30명 이상), 컴벳서츠 D등급(40명 이상) ③ 1개사가 전투복과 컴벳서츠를 신청한 경우 각각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생산 가능 여부는 생산인력과 생산설비를 모두 포함 ④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보유량	비고
본봉기	10 대	
칼본봉기	1 대	
쌍침기	1 대	
오바룩기	1 대	
인터룩기	1 대	
오드람프재봉기	5 대	4침 편평재봉기
컴프레서	1 대	에어 공급
바스기	1 대	컴퓨터 재봉기

* 자체 "관리번호"를 장비에 부착하고, "주요 제조시설 현황 목록(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

2. 제조 공장 (생산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컴벳서츠가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m ²)	기타
생산 면적	300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창고 면적	100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 사무면적, 생산면적, 창고면적 등이 구분된 도면(간략한 수기 작성 가능) 제출
* 생산면적의 상세 내용(생산설비 배치도) 제출

3. 생산 인력

가.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함

등급	조달요청규모(추정가격)	필요 인력		기타
		경쟁계약	MAS	
A	고시금액 미만	15명 이상	10명 이상	대표자 제외
B	고시금액 이상~5억원 미만	20명 이상	14명 이상	
C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명 이상	21명 이상	
D	10억원 이상	40명 이상	28명 이상	

*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가.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소지자

나. 현 근무지 6개월 이상 근무 생산직 경력자

다.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으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생산직 경력자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 등이 표기된 ‘인력 현황관리표’를 제출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류(전투복, 컴벳셔츠, 방한복, 전투조끼)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 장갑, 모자류 등(피복류 이외 품목)의 생산인력은 중복 적용 불가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3		
품명 (세부품명번호)	군용방한복 (5310270109) ①심실링 작업이 있는 방한복 ②심실링 작업이 없는 방한복 * 방투습 우의에도 적용 가능함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특수군복·방한복 또는 야전상의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 동영상 파일에는 필수생산공정(부착물 부착, 합봉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제품생산 과정' 및 '모든 생산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점검'에서 재확인 예정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심실링 작업을 포함한 생산능력(연속 작업)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공업적인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연속작업 예시) “앞판 봉제→ 뒤판 연결→ 소매 부착→ 칼라 부착 → 마감처리” 담당하는 작업자가 따로 있고, 한 벌의 옷이 계속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면서 완성됨 (방한복이 아닌, 유사 물품의 '상의/하의' 합봉하는 과정으로 대체 가능)			

- ③ 방투습(심실링공정) 방한복과 일반 방한복을 구분하여 인정하며 생산인력 등급도 표시한다.
 * 예) 군용방한복-방투습방한복 C등급(30명 이상), 군용방한복-일반방한복 D등급(40명 이상)
- ④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 ⑤ (기능성) 우의는 방투습방한복과 공정 및 기계설비가 유사하므로 군용방한복-방투습방한복 확인서를 적용할 수 있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가. 심실링 공정이 있는 방한복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본봉기	12 대	
칼본봉기	2 대	
컴프레셔	1 대	에어 공급
심실링기	5 대	
바텍기	1 대	
바스기	3 대	컴퓨터 재봉기

나. 심실링 공정이 없는 방한복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방상외피	방상내피	
본봉기	12 대	12 대	
체인본봉기	3 대		체인기, 루퍼기, 401기
쌍침기	1 대		
오바룩기	3 대		
소매달이기	2 대	2 대	
니온오바룩기	3 대	3 대	안전오버룩기(5사 오버룩기)
컴프레셔	1 대	1 대	에어 공급
바텍기		2 대	
바스기	3 대	2 대	컴퓨터 재봉기

* 자체 "관리번호"를 장비에 부착하고, "주요 제조시설 현황 목록(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

2. 제조 공장

구분	최소 면적(m ²)	기타
생산 면적	330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창고 면적	100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 * 사무면적, 생산면적, 창고면적 등이 구분된 도면(간략한 수기 작성 가능) 제출
- * 생산면적의 상세 내용(생산설비 배치도) 제출

3. 생산 인력

가.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함

등급	조달요청규모(추정가격)	필요 인력	기타
A	고시금액 미만	15명 이상	대표자 제외
B	고시금액 이상~5억원 미만	20명 이상	
C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명 이상	
D	10억원 이상	40명 이상	

- *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가.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소지자

나. 현 근무지 6개월 이상 근무 생산직 경력자

다.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으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생산직 경력자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 등이 표기된 ‘인력 현황관리표’를 제출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전투복, 컴벳셔츠, 방한복, 전투조끼)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 * 장갑, 모자류 등(피복류 이외 품목)의 생산인력은 중복 적용 불가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4		
품명 (세부품명번호)	전투 조끼 (5310270108)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불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확인 사항 아님		- 불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불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전투 조끼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유압프레스 재단기	1 대	캠재단기 1대로 대체 가능
열재단기	1 대	
재단대	1 대	폭 1.8m × 길이 8m 이상
본봉기	10 대	
상하송재봉기(640 재봉기)	4 대	
지그재그(바텍)재봉기	4 대	
바스기(컴퓨터재봉기)	1 대	
금구류부착기	1대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해당 품목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m ²)	기타
생산 면적	300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창고 면적	200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5		
품명 (세부품명번호)	장갑(편직 제외) (5310250401)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확인 사항 아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장갑(편직 제외)이 등록된 공장 면적: 200 m ² 이상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장갑 생산공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상시 근로자 확인)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프레스재단기	5 대	
본봉기	10 대	
쌍침기	5 대	
칼본봉기	5 대	
타프재봉기	2 대	뉘운바리 또는 실린더베드재봉기
오바룩기	2 대	
지그재그재봉기(바텍기)	2 대	

2.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장갑 이외 품목의 생산 인력에 적용된 근로자는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6		
품명 (세부품명번호)	남성용모자 (5310250301) ①베레모, ②전투모, ③정모	적용 규격	① 베레모: 국방규격 (최신형) ② 전투모/정모: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아님		- 공장 면적: 200m ² 이상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군모 또는 전투모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대)			비고
	정모	전투모	베레모	
프레스기	2	2		캠재단기 대체 가능
본봉기	10	6	5	
이본침기	2	3		
지그재그재봉기(바택기)		1		
편직기			20	
축융기			1	
열처리기			1	
스팀세팅기			1	

2.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15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모자 이외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인력으로 중복적용 하지 않는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7		
품명 (세부품명번호)	이불 (5212150201)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불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아님		- 불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불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재단대	1 대	폭 2m × 길이 5m 이상
원헤드 퀼팅기	2 대	차렵이불 누빔용
컴퓨터 퀼팅기	2 대	이불, 요 누빔용
면입기	1 대	충진재 면입용
칼재봉기	6 대	
인터록기	1 대	
오바룩기	1 대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이불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m ²)	기타
생산 면적	330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창고 면적	200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15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이불류(침낭 포함) 이외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8		
품명 (세부품명번호)	침낭 (4912150401)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아님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침낭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재단대	1 대	폭 1.8m × 길이 8m 이상
본봉기	15 대	
칼재봉기	1 대	
체인재봉기	2 대	
쌍침기	5 대	
웨빙절단기	1 대	
심실링기	5 대	
오바룩기	5 대	
스냅기	2 대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침낭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m ²)	기타
생산 면적	300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창고 면적	200	임차 가능(증빙 자료 제시)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9		
품명 (세부품명번호)	야전 배낭 (5312160301)	적용 규격	국방 규격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확인 사항 아님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배낭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유압프레스재단기	1 대	캠재단기로 1대로 대체 가능
열재단기	1 대	세폭직물 절단용
재단대	1 대	폭 1.8m × 길이 8m 이상
본봉기	10 대	
2분침 체인재봉기	2 대	후직물 재봉용
지그재그(바텍)재봉기	4 대	
심실링기	4 대	컴프레셔 포함

2. 제조 공장 (생산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해당 품목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m ²)	기타
생산 면적	300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창고 면적	200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0		
품명 (세부품명번호)	야영용텐트(4912150301) ① 개인전투용천막, ② 일반전투용천막 ③ 분대용천막, ④ 지휘소용천막 ⑤ 개인용특수천막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천막류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개인전투용천막, 일반전투용천막, 분대용천막, 지휘소용천막, 개인용특수천막은 구분하여 생산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도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시, 야영용텐트-개인전투용천막). ④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개인용	분대용	일반전투용	지휘소용	개인용특수
상하송재봉기(640재봉기)	5	5	10	10	5
체인재봉기	3	3	3	3	3
쌍침기	2	3	3	3	2
체인재봉기(2본침)	3	3	5	5	3
본봉기	10	10	10	15	10
심실링기	3		5	5	3
고주파기		1	1	1	
바텍기	2	2	2	2	2
세폭직물절단기	2	2	2	2	2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해당 품목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m ²)					비고
	개인용	분대용	일반전투용	지휘소용	개인용특수	
생산 면적	165	480	600	600	165	①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합산 면적 인정
창고(설치) 면적	165	330	330	330	165	임차 가능(자료 확인)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 품목(전투 조끼 제외) 및 장갑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1														
품명 (세부품명번호)	야전 깔개 (491215020)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비명</th> <th>최소 보유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열챔버(10m 이상)</td> <td>1 대</td> <td>원자재 예열용</td> </tr> <tr> <td>유압성형기(프레스)</td> <td>1 대</td> <td>100t 이상</td> </tr> <tr> <td>매트금형</td> <td>1 조</td> <td>제품 금형</td> </tr> </tbody> </table> *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가열챔버(10m 이상)	1 대	원자재 예열용	유압성형기(프레스)	1 대	100t 이상	매트금형	1 조	제품 금형	- 공장 면적: 300㎡ 이상 (합산 면적 인정)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가열챔버(10m 이상)	1 대	원자재 예열용													
유압성형기(프레스)	1 대	100t 이상													
매트금형	1 조	제품 금형													
2) 검사 설비: 확인 사항 아님		생산 능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2		
품명 (세부품명번호)	전투화 (4618169501)	적용 규격	국방 규격 및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 불임 기준에 따른다.		- 불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불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군화 2.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방투습(심실링공정) 전투화와 일반 전투화를 구분하여 생산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예) 전투화-방투습 전투화, 전투화-일반 전투화 ④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건조(히팅)챔버	3 대	
냉각 챔버	1 대	냉각기
핫멜트	1 대	
토가습기	1 대	
게이지 압착기	2 대	
버핑기	2 대	은면용
집진기	2 대	은면용
스팀가습기	1 대	
사방압착기	1 대	
심실링기	1 대	심실링 작업이 필요한 규격에 한함

2. 검사 설비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온습도 조절 챔버	1 대(조)	항온항습기
인장강도시험기	1 대	냉각기
경도시험기	1 대	
굴곡시험기	1 대	

3. 제조 공장

구분	최소 면적(m ²)	기타
생산 면적	660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창고 면적	300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4.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4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 품목에 대한 최소기술인력기준에 적용한 근로자는 생산 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3		
품명 (세부품명번호)	부착물(직조/철제) ① 계급장(5512180401) ② 휘장(5512180402) ③ 군용마크(5310252003) ④ 견장 (5310252002)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 (직조/철제 구분하여) 공장 면적: 200㎡ 이상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계급장 및 표지장 2.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 확인.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 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 확인(생산 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철제와 직조 부착물은 구분하여 생산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서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예) 직조 부착물, 철제 부착물 ③ 확인자는 신청자의 직접 생산공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④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직조	철제	
자카드직기	7 대		직조용
본봉기	3 대		
오바룩기	2 대		
자수기(헤드 10두 이상)	1 대		
고정형 프레스(100t 이상)		2 대	바닥 고정형
고정형 프레스(50t 이상)		1 대	바닥 고정형
커팅 프레스(30t 이상)		3 대	
버핑기		1 대	
금형		1 조	최소 100개/조 이상

2.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부착물 이외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마. 직조 부착물에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는 철제 부착물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철제 부착물 생산 인력에 적용되는 근로자도 직조 부착물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4																							
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통(수통) (4912159301)	적용 규격	국방 규격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 공장 면적 250㎡ 이상 (합산 면적 인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비명</th> <th>최소보유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확관기</td> <td>1 대</td> <td>100t 이상 수압 또는 유압 확관기</td> </tr> <tr> <td>스피닝머신</td> <td>1 대</td> <td>취수구 형상 제조</td> </tr> <tr> <td>용접기</td> <td>1 대</td> <td>수통 바닥 용접</td> </tr> <tr> <td>진공기</td> <td>1 대</td> <td>2중 보온수통에 적용</td> </tr> <tr> <td>금형</td> <td>1 대</td> <td>수통 금형</td> </tr> <tr> <td>3축 커링설비</td> <td>1 대</td> <td>제품 압착, 회전, 커링 압착용</td> </tr> </tbody> </table>	장비명	최소보유량	비고	확관기	1 대	100t 이상 수압 또는 유압 확관기	스피닝머신	1 대	취수구 형상 제조	용접기	1 대	수통 바닥 용접	진공기	1 대	2중 보온수통에 적용	금형	1 대	수통 금형	3축 커링설비	1 대	제품 압착, 회전, 커링 압착용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4인 이상(대표자 제외)	
장비명	최소보유량	비고																						
확관기	1 대	100t 이상 수압 또는 유압 확관기																						
스피닝머신	1 대	취수구 형상 제조																						
용접기	1 대	수통 바닥 용접																						
진공기	1 대	2중 보온수통에 적용																						
금형	1 대	수통 금형																						
3축 커링설비	1 대	제품 압착, 회전, 커링 압착용																						
*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수통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5		
품명 (세부품명번호)	반합 (4912151102)	적용 규격	국방 규격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 불임 기준에 따른다.		- 공장 면적 250㎡ 이상 (합산 면적 인정)	
		생산인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대표자 제외)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반합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확인: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기계식 프레스(55t 이상)	1 대	절단 및 반합 성형 작업용
유압프레스(80t 이상)	1 대	상·하단 stroke 500mm 이상, 하단부 녹아웃 기능
유공압 밴딩 프레스(10t 이상)	1 대	손잡이 작용용
리벳팅기	1 대	
그로밋기	1 대	
3축 컬링설비	1 대	제품 압착, 회전, 컬링 압착용

2. 검사 설비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피막두께측정기(40 μ m 이상)	1 대	비파괴방법 또는 현미경 조사방법 적용이 가능한 측정 설비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6												
품명 (세부품명번호)	보온 식관 (4912151103)	적용 규격	국방 규격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 공장 면적: 250 m ² 이상 (합산 면적 인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비명</th> <th>최소 보유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우레탄)발포기</td> <td>1 대</td> <td>직경 1,000$\varnothing$ 이상</td> </tr> <tr> <td>(우레탄)성형기</td> <td>1 대</td> <td>AR코팅시 제품 고정용</td> </tr> <tr> <td>건조로</td> <td>1 대</td> <td></td> </tr> </tbody> </table>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우레탄)발포기	1 대	직경 1,000 $\varnothing$ 이상	(우레탄)성형기	1 대	AR코팅시 제품 고정용	건조로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우레탄)발포기	1 대	직경 1,000 $\varnothing$ 이상											
(우레탄)성형기	1 대	AR코팅시 제품 고정용											
건조로	1 대												
*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2) 검사 설비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비명</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환경시험기 1대 이상(보온성, 내한성, 내열성 확인시험기)</td> <td> ① 온도 범위: 고온 110℃ 이상, 저온 -20℃ 미만 ② 크기: 800mm×700mm×600mm 이상 </td> </tr> </tbody> </table>		장비명	비고	환경시험기 1대 이상(보온성, 내한성, 내열성 확인시험기)	① 온도 범위: 고온 110℃ 이상, 저온 -20℃ 미만 ② 크기: 800mm×700mm×600mm 이상								
장비명	비고												
환경시험기 1대 이상(보온성, 내한성, 내열성 확인시험기)	① 온도 범위: 고온 110℃ 이상, 저온 -20℃ 미만 ② 크기: 800mm×700mm×600mm 이상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7		
품명 (세부품명번호)	3단 접철식 야전삽 (2711200403)	적용 규격	KS B 7359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 불임 기준에 따른다.		- 공장 면적: 600m ² 이상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불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야전삽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유압프레스(200t 이상)	1 대	샅날 고정쇠, 손잡이 등 가공에 필요
유압프레스(80t 이상)	2 대	샅날 가공에 필요
드릴링머신	1 대	샅자루 지지대 홀 가공용

2. 검사 설비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경도시험기(로크웰)	1 대	열처리 후 부품의 경도 확인에 필요
인장압축강도시험기(최소 하중 225kg 이상)	1 대	강도·하중 등의 품질확인에 필요
야전삽 시험용 지그	1 대(조)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7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야전삽, 반합 이외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근로자는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8											
품명 (세부품명번호)	인식표줄/인식표 (3115190101/5512170103)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비명</th> <th>최소 보유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볼체인기</td> <td>2 대</td> <td>인식표줄 제조에 필요</td> </tr> <tr> <td>프레스(50t 이상)</td> <td>1 대</td> <td>인식표 제조에 필요</td> </tr> </tbody> </table> *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볼체인기	2 대	인식표줄 제조에 필요	프레스(50t 이상)	1 대	인식표 제조에 필요	- 공장 면적: 150㎡ 이상 (합산 면적 인정)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볼체인기	2 대	인식표줄 제조에 필요										
프레스(50t 이상)	1 대	인식표 제조에 필요										
2) 검사 설비: 확인 사항 아님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직접 생산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9														
품명 (세부품명번호)	전투용 안경 (보안경) (4618180201)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비명</th> <th>최소 보유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진공증착기 (AR코팅기)</td> <td>1 대</td> <td>직경 1,000$\varnothing$ 이상</td> </tr> <tr> <td>코팅용 지그</td> <td>1 조</td> <td>최소 20개/1조 이상 AR코팅시 제품 고정용</td> </tr> <tr> <td>렌즈커팅기 (렌즈가공기)</td> <td>1 대</td> <td></td> </tr> </tbody> </table> *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진공증착기 (AR코팅기)	1 대	직경 1,000 $\varnothing$ 이상	코팅용 지그	1 조	최소 20개/1조 이상 AR코팅시 제품 고정용	렌즈커팅기 (렌즈가공기)	1 대		- 공장 면적: 150m ² 이상 (합산 면적 인정)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진공증착기 (AR코팅기)	1 대	직경 1,000 $\varnothing$ 이상													
코팅용 지그	1 조	최소 20개/1조 이상 AR코팅시 제품 고정용													
렌즈커팅기 (렌즈가공기)	1 대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아님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 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추 가 기 준															
1.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인자는 반드시 신청회사 직원(4대 보험 확인)이 직접 생산하는 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20		
품명 (세부품명번호)	고무보트 (2511169801)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 불임 기준에 따른다.		- 공장 면적 300㎡ 이상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재단기	1 대	
접합기	1 대	

2. 검사 설비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Push-pull 게이지	1 대	
압력계	1 대	최소측정단위: 0.01 kg/cm ² (또는 1kPa)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21		
품명 (세부품명번호)	전투식량 (5022120102) ①복원형, ②발열형, ③특전형	적용 규격	국방 규격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 불임 기준에 따른다.		- 공장 면적: 1,000 m ² 이상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① 식품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 ②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대표자 제외)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①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 발열·복원형 3년, 특전형 2년) ②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및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행) ③ HACCP인증서(식품 유형별)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3. 시제품 검사 사항 불임 기준에 따른다.			

(붙임)

1. 생산설비 및 공장 면적

가. 발열형 전투식량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세척(또는 불림) 시설	1 대(조)	
절단기	1 대	
분쇄기	1 대	
전처리기(자숙 또는 블랜칭기)	1 대(조)	
혼합기	1 대	
충진기	1 대	
밀봉기	1 대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	1 대	
냉장실(0~10℃)	1 대(조)	
냉동실(-18℃ 이하)	1 대(조)	

나. 복원형 전투식량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동결 건조기	1 대(조)	1톤 이상
진공 건조기 등	1대(조)	1톤 이상
세척(또는 불림) 시설	1 대(조)	
절단기	1 대	
증숙(또는 증자기)	1 대(조)	
밀봉기(진공포자기 포함)	1 대(조)	
냉장실(0~10℃)	1 대(조)	
냉동실(-18℃ 이하)	1 대(조)	

* 동결 건조기와 동등 이상의 품질 확보가 가능한 설비/공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체 인정 가능

다. 특전형 전투식량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혼합기(또는 반죽기)	1 대(조)	
오븐기	1 대	
밀봉기	1 대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	1 대	
절단기	1 대	
냉장실(0~10℃)	1 대(조)	
냉동실(-18℃ 이하)	1 대(조)	

2. 검사 설비(공동 적용함)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수분측정기(또는 수분측정장비)	1 대(조)	
고압멸균기(autoclave)	1 대	온도 121℃, 압력 15psi
배양기(인큐베이터)	1 대	35±1℃의 온도 유지 가능
무균작업대(클린벤치)	1 대	윈도우, 팬, 필터, UV 램프 포함
전자저울	1 대	

3. 시제품 검사 사항

가. 발열형 전투식량(최신 국방규격)

①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수량
3.8.1 요구성능	1식 중량	4.6.1.2 중량	5 개
	1식 부피	4.6.1.3 부피	5 개
	1식 열량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영양소열량범위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소비기한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
	발열체	4.6.2.3 발열체 성능시험 및 발열체 용수의 안전성	1 개
3.5.1 식단의 구성		4.6.1.1 식단수	3 개
3.8.5 제품 포장상태		4.6.2.6 충격시험	3 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발기준 적합 여부	1 개 (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② 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영양소, 열량, 발열 용수 안전성) 외 자체 검사

나. 복원형 전투식량(최신 국방규격)

①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수량
3.8.1 요구성능	1식 중량	4.6.1.2 중량	5 개
	1식 부피	4.6.1.3 부피	5 개
	1식 열량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영양소열량범위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소비기한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
	발열체	4.6.2.3 발열체 성능시험 및 발열체 용수의 안전성	1 개
3.8.2 식단의 구성		4.6.1.1 식단수	3 개
3.8.5 제품 포장상태		4.6.2.6 충격시험	3 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발기준 적합 여부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② 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영양소, 열량, 발열 용수 안전성) 외 자체 검사

다. 특전형 전투식량(최신 국방규격)

①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수량
3.8.1 요구성능	1식 중량	4.6.1.2 중량	5개
	1식 부피	4.6.1.3 부피	5개
	1식 열량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개(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영양소열량범위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개(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소비기한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
3.8.2 식단의 구성		4.6.1.1 식단수	3개
3.8.5 제품 포장상태		4.6.2.5 충격시험	3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발기준 적합 여부	1개(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② 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영양소, 열량) 외 자체 검사

4. 기준서 세부내용

가. 생산설비

장비명	적용	비고
세척(또는 불림) 시설	발열, 복원	원료 세척 또는 불리는 기계
건조기(동결·진공 건조 등)	복원	원료를 건조하는 기계
절단기	발열, 복원	원료 절단 기계/주·부식 제조에 필요
절단기	특전	어육·포류 절단에 사용하는 기계
분쇄기	발열	원료 분쇄 기계/주·부재료 제조에 필요
전처리기(자숙 또는 블랜칭기)	발열	원료 자숙 또는 블랜칭 기계/주·부재료 제조에 필요
혼합기	발열	재료 혼합 기계/주·부재료 제조에 필요
혼합기(또는 반죽기)	특전	재표 혼합 및 반죽에 사용하는 기계
오븐기	특전	케이크류를 굽는데 사용하는 기계
충진기	발열	혼합된 주재료를 포장재에 충진하는 기계
증숙기(또는 증자기)	복원	재료 증숙(찜)에 사용하는 기계/옥수수, 콩 등의 증자에 필요
밀봉기	발열	충진된 포장재를 밀봉하는 기계/제품 포장에 필요
밀봉기(진공포장기 포함)	복원, 특전	충진된 포장재를 밀봉(또는 진공포장)하는 기계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	발열, 특전	밀봉된 날개 제품을 살균하는 기계/완제품 제조에 필요
냉장실(0~10℃)	공통	원·부재료 및 제품 보관에 필요
냉동실(-18℃ 이하)	공통	원·부재료 및 제품 보관에 필요

나. 검사설비

장비명	적용	비고
수분측정기(또는 장비)	공통	완제품의 수분함량 측정에 필요
고압멸균기(Auto Clave)	공통	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121℃의 온도유지가 가능할 것)
배양기(Incubator)	공통	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35±1℃의 온도유지가 가능할 것)
무균작업대(Clean Bench)	공통	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원도우, 팬, 필터, UV램프 포함)
전자저울	공통	완제품의 중량 검사에 필요(검교정 필수)
당도계 또는 굴절계	발열	부식Ⅲ(육포류) 소스(정제수 혼합)의 농도(Brix) 측정에 필요
	특전	어·육포류 소스(정제수 혼합)의 농도(Brix) 측정에 필요
염도계	복원	부식(국)에 적정물량(150ml)을 보충 후 염도 측정에 필요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22		
품명 (세부품명번호)	발전기(가솔린엔진식) (2611160401) * 충전기(발칸포충전용, 차기열상감시장비용) 포함	적용 규격	국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 불임 기준에 따른다.		- 공장 면적 300㎡ 이상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1)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2) 전기기사 1인 이상 보유(대표자 포함)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발전기와 충전기는 구분하여 인정하고 확인서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권선기	1 대	
진공함침기	1 대	
건조로	1 대	120℃ 이상
밸런싱기	1 대	발전기 용량별
유압프레스	1 대	10t 이상

2. 검사 설비

가. 발전기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전력계(전력측정기)	1 대(조)	11 kW 이상
절연저항시험기	1 대(조)	5M Ω 이상
주파수측정기	1 대(조)	220 VAc, 60Hz, 10kW 이상
내전압 시험기	1 대(조)	AC 1,500V
역률계	1 대(조)	10kW 이상
기록장치	1 대(조)	전압, 전류, 주파수
저저항측정기	1 대(조)	50 Ω 이하
부하시험설비	1 대(조)	발전기 용량별
왜율측정기	1 대(조)	10kW 이상
온도기록기	1 대(조)	
상회전 측정기	1 대(조)	3,600 rpm 이상
회전속도측정기	1 대(조)	3,600 rpm 이상
소음측정기	1 대(조)	75dBA 이상

나. 충전기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전력측정기	1 대(조)	3 kW 이상
절연저항시험기	1 대(조)	500VDc, 100 M Ω 이상
주파수측정기	1 대(조)	1.5kW 이상, 발칸에 한함
절연내압시험기	1 대(조)	AC 1,500V
기록장치	1 대(조)	전압, 전류, 주파수
저저항측정기	1 대(조)	50 Ω 이하
부하시험설비	1 대(조)	발전기 용량별
왜율측정기	1 대(조)	1.75 kW 이상
온도기록장치	1 대(조)	
회전속도 측정기	1 대(조)	3,600 rpm 이상